

보도 일시	2022.10.5.(수) 국무회의 시작 시(석간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10. 4.(화) 오후
담당 부서	해양정책실 해양수산물과학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인경 (044-200-6220)
		담당자	사무관 안장현 (044-200-6221)

「해양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 개정안 5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물 신기술과 연구인프라 활용도 제고에 중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이 10월 5일(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물 신기술을 확인받은 경우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과 해양수산물 연구인프라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수산물신기술 적용 제품 또는 시설 확인 제도 신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물 분야에서 최초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물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나, 신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시설에 대한 확인 제도는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물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시설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확인을 받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이나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시 가점 등의 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해양수산물 연구장비·시설 공동활용 활성화 지원 기반 마련

현행법에는 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해양수산물 연구장비·시설을 관련 분야 연구자가 무상 또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관련 절차나 세부기준은 미비하여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의 목록 관리, 사용 일정 조정 등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사용료 등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이 활성화되면 기업과 대학 등이 기술검증 등을 위해 자체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기업들이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 확인 이후 실제 특례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후속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추진배경 및 경과

- 현행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에 연구장비·시설 등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세부 절차는 미비
 - 각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 시설의 목록관리 및 사용일정 조정 등 체계적 관리·공동활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운영 추진
- *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21.12,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장관회의 의결)
-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제도 외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제품에 대한 확인 절차와 지원 방안은 미비하여 효과 제한적
 - 해양수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공사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조달특례 지원 대상에 추가 예정
- * 『중소기업 영업지원 규제개선방안』(‘21.9, 국조실) 포함 과제
- ** 육성법 개정(‘22) → 기재부, 행안부 등과 협의하여 계약 관련 법령 개정(‘23)

□ 주요내용

-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연구 장비·시설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 연구 장비·시설을 관리하는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간 연구 장비·시설 공동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확인 제도 도입
 - 해양수산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이나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기술개발 성과의 활용 촉진) ① (생략) ②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연구 장비·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무상으로 또는 실비(實費)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양수산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 장비·시설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무상으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장비·시설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 장비·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 장비·시설의 현황 조사 2. 유휴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활용 촉진 및 장려 3.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활용 일정 관리 4. 그 밖에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19조의2(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된 경우 이를 신기술 적용제품·시설로 확인할 수 있다.